

제2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

2차 본회의 (2020.06.11.)

「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(전문위원 이 용 섭)

「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06월 8일, 이주웅 의원 발의
- 회부일자 : 2020년 06월 10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57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0년 06월 10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이주웅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이 조례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등에서 결혼 이민자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급대상자에 결혼 이민자 및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를 추가하고자 함에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가 있음.

나. 주요내용

조례안 제3조(지급대상자)에 “평창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 이민자” 및 “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평창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자”를 추가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용섭)

- 본 조례안은 지급대상자를 추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조례안의 주요내용은

조례안3조 지급대상자에 “「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라 평창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”와 “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평창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”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.

○ 본 조례안의 지급대상자 확대는 「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3조,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3조 상 제한외국인, 다문화가족에 대해 특별한 처우 수립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며

○ 강원도 내 조례제정 5개시·군의 대상자 규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| 시군별 | 1.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| 2.결혼이민자 | 3.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자 |
|-----|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속 초 | ○ | 규정없음, 실제지급 | 규정없음, 실제지급 |
| 인 제 | ○ | ○ | 규정없음 |
| 철 원 | ○ | ○ | ○ |
| 태 백 | ○ | ○ | 규정없음 |
| 정 선 |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군수가 결정, 1·2·3호 실제지급 | | |

※상기 1·2·3호 대상자 모두는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 해당

○ 대상자 변경으로 추가되는 수혜자는 176명으로 확인되며(2020. 05. 27.기준) 개정에 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지급대상자) 재난기본소득은 지급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.

1.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
2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라 평창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
3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평창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<u>제3조(지급대상자) 지급대상자의 범위는 지급기준일 현재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창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한다. (생략)</u></p> | <p><u>제3조(지급대상자) 재난기본소득은 지급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라 평창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평창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(현행과 같음) |

